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11212 vol.67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추진과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연구진 장세길 부연구위원 zoru21@jthink.kr

Contents

1.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및 진흥방안 수립
2. 정책의 전환 : 한스타일 육성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으로
3.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내용
4. 전북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계획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12월 12일 vol.67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원도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추진과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1.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및 진흥방안 수립 ····· 4

2. 정책의 전환 : 한스타일 육성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으로 ····· 5
   1) 한스타일 육성의 성과와 한계
   2) 한스타일육성 실질적 종료,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전략 추진

3.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내용 ····· 7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범위
   2) 전통문화산업진흥의 비전, 중점전략, 핵심사업
   3)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4. 전북의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 11
   1) 한스타일 사업 포괄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정책으로 전환
   2)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활로 모색
   3)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검토
   4) 법안 핵심내용 대응: 표준화, 인력양성, 전통문화촌 · 전통문화산업지구 조성 등
   5) 법 제정 위한 정치권의 노력 및 전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요약본

한스타일 육성 사실상 종결,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전략 추진

-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10년 11월 25일에 이어 2011년 10월 21일에 발의됐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으며, 올해에는 '전통문화산업진흥 종합육성방안'을 수립 중임
-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을 끝으로 한스타일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음. 즉, 정부는 한스타일 사업을 종결하고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는 한스타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정부정책의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 전통문화산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촌 지정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 조성,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전통문화상품 인증 등

전라북도 대응방안

- 첫째, 정부전략이 바뀐 상황에서 한스타일 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둘째,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단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활로를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
- 셋째,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법안 제20조)으로 전환해 정부는 예산절감을, 전주시는 운영문제를 해소하는 윈윈(Win-Win)전략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넷째, 발의법안의 핵심내용인 표준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전통문화촌 · 전통문화산업지구 등과 관련해 준비태세를 갖춰 법 제정 이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 다섯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1.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 및 진흥방안 수립

2011년 10월 21일,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발의

-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대표발의 김광림)이 2011년 10월 21일에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음
- 제안이유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 발전이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수립 · 시행 의무,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실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전통문화촌 지정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 조성,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등임

2010년에 동일명으로 발의됐던 법안, 하지만 2011년은 상황이 달라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이미 2010년 11월 25일에 발의(대표발의 황우여 의원)됐었음. 이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 발의에 대한 병합심의를 진행했지만[1], FTA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국회 파행으로 법제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발의와 발맞춰 전통문화산업진흥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실태조사와 기초연구에 이어, 2011년 종합 육성방안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음
- 그런데 실태조사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임. 전통문화산업을 '전통섬유 · 복식', '전통식품', '전통건축', '전통공예'로 분류해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이것 역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에서 구분하는 분류기준과 동일함
- 기초연구에 이어 수행(2011.2~12)하고 있는 종합계획 성격의 '전통문화산업진흥 육성방안' 역시 전통의류, 전통식품, 전통공예, 전통건축으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을 육성 진흥 핵심 사업으로 포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김광림 의원과 공동으로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전통문화, 산업화의 길을 열다'를 개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전통문화산업진흥 관련 주요 활동	
2010. 07~11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11. 25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황우여)
2011. 02 ~ 12	전통문화산업 육성 진흥방안 연구(안동대학교)
2011. 10. 21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대표발의 김광림)
2011. 11. 09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의원김광림)

1) 발의시기와 발의의원이 다를 뿐이지 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대동소이함.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한스타일 육성계획’, 2011년 마무리

-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문화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에는 전통문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오던 ‘한스타일(Han Style) 육성 종합계획’이 2011년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무게중심을 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육성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임

전라북도, 전통문화산업 관련 신속한 대응 필요

-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한스타일 사업의 핵심지역.
- 하지만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한스타일 사업의 선두주자라는 위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임

2. 정책의 전환 : 한스타일 육성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으로

1) 한스타일 사업의 성과와 한계

한스타일의 개념과 기본 구상

- 한(韓)스타일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
- 일상성, 상징성, 산업화 가능성, 정책화 필요성에 근거해 6개 분야를 선정
- ‘전통문화의 복원 및 연구지원→일상생활 접목 및 저변 확대→산업화 · 상품화→해외시장 개척 · 진출’이라는 단계적 육성전략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삶의 방식(Global Life Style)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한스타일 육성 2011’의 비전과 추진전략

- 기본 구상은 2015년 이후, 즉 4단계까지 수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종합육성계획은 2단계인 2011년까지 수립되어 있음. ‘한스타일 육성 2011’ 계획이 그것임
- ‘한스타일 육성 2011’의 비전은 “세계문화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 실현”이며, 전략적 목표는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서 2006년 세계 10위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2011년 세계 8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韓)스타일(Han Style) 육성 종합계획” 참조〉

- 사업의 추진방향은 “일상생활과 접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화”, “경제적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화”, “해외시장 진출 및 홍보 확대로 세계화”였음

전통문화의 산업화 및 세계화에 대한 관심 증가

-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한스타일과 관련한 관심과 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도 늘어났음.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식관광 예산은 2003년 3억원에서 2008년 21억으로 대폭 늘어났음
- 6개 분야에 대한 선도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됐는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추 진 과 제	비 고
총괄	한스타일 해외문화행사 개최(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07~'09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주제관, 참가업체 부스, 비즈니스 상담 등)	'08~'10
	한스타일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운영	'06~
한글	해외 세종학당 개설(60개소) 및 운영지원 등 한글 세계화 사업	'07~
한식	해외 한식당 문화적 고품격화 사업	'07~'09
한복	한복페스티벌, 한복 패션쇼, 체험행사 등	'07~'11
	왕의 복식에 대한 자료 조사연구 등 연구사업	'07, '09
한옥	공공시설 내 한옥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활성화 사업	'07~'09
한지	기능성 한지 개발, 조선왕조실록복본화 사업 등	'07~'11
한국음악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및 창작 국악 지원 등(심청, 화선 김홍도 등)	'07~

〈자료: 정광렬(2011), "한스타일 정책의 가치와 과제" 참조〉

비전과 목표는 대외적인 성격이었지만, 실질적 사업은 대내적인 측면을 강조

- 한스타일 정책은 전통문화콘텐츠 세계화 전략이라는 대외적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즉, 한스타일은 외국인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임
- 한스타일을 통해 외국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상품의 선호도 증가 및 해외관광객의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으로, 예산도 여기에 집중돼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방식을 보면, 사업목표와 정책대상이 대외적이기보다 대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 즉, 한스타일 정책에서는 어디까지나 세계화를 위한 연계선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임

한스타일 육성계획은 거창했지만 실제 정부지원은 미흡

-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는 거창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한스타일 육성에 보여준 의지나 지원은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스타일 예산추이를 보면, 종합계획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24억원으로 2006년(12억원)에 비해 두 배 증가. 2008년에는 34억원으로 다시 증가. 하지만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1년에는 7.2억원에 머물렀음
- 2007년 예산 또한 전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전통문화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계획에 비해 절대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임[2)]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	12억	24억	34억	34억	19억	7.2억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금	기금	기금	기금

〈자료: 정광렬(2011), "한스타일 정책의 가치와 과제" 참조〉

2) 예산은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직접적인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국한한 것으로 실제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 2011년 예산규모는 11,928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신규 예산이 아니라 기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정광렬 2011: 10)

2) 한스타일 육성 실질적 종료, 후속계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전략 추진

◎ 2단계 사업 2011년 마무리, 3단계 추진전략 수립계획 없어… 일부 계속사업만 지원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보면 한스타일과 관련한 일부 계속사업(한지 해외홍보 및 상품개발, 한복문화행사 및 생활화 홍보)은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신규 사업이 없다는 점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한스타일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한글(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등), 한옥(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지원 등), 한국음식(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은 한스타일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당초 한스타일 육성계획은 2단계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했음.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한스타일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없어 보임. 대신 정부는 새롭게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임

◎ 한스타일 사업 실질적 종료로 봐야… 전라북도 · 전주시, 정책적 판단 필요

- 후속 계획인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한스타일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주도적으로 한스타일 사업을 추진하던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는 신속하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의지가 사라진 한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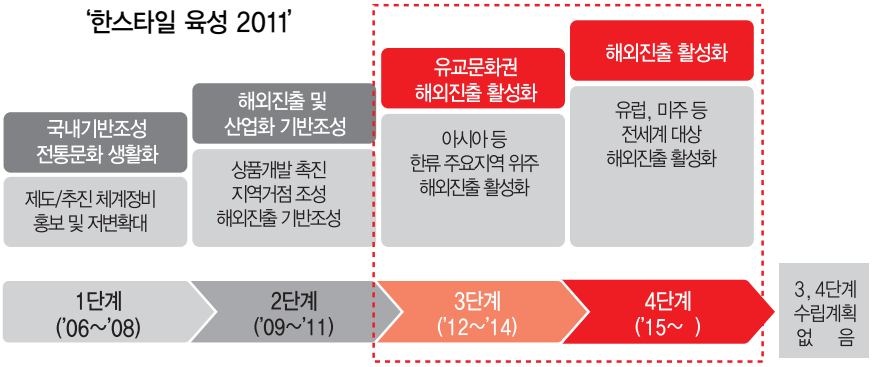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11" 참조〉

3.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내용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와 범위

◎ 전통문화산업의 법률적 정의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은 전통문화산업의 개념(제2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전통문화산업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
- 전통문화상품 : 「문화산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

른 문화상품 중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 창의성 · 오락성 · 여가성 · 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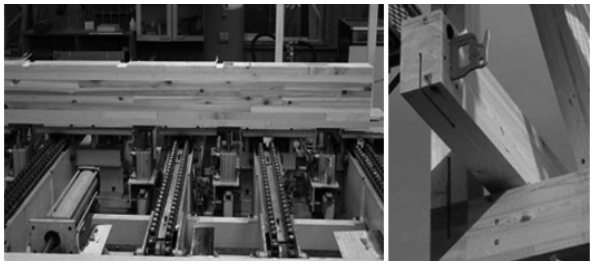

〈한옥의 산업화와 관련한 PRE-CUT 생산시스템. 자료: 김진희(2011), "현대한옥의 비전" 참조〉

전통문화산업의 범위

- 발의된 법안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전통문화양식을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무예, 전통한지(제조기술 포함)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통문화산업으로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무예를 제외한 나머지, 즉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한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수행된 기초연구와 2011년 수행 중인 종합육성 진흥방안을 보더라도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과 유사하게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기초연구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로 전통섬유 · 복식, 전통식품, 전통건축, 전통공예로 분류함. 육성방안에서 수행된 실태조사에서는 경우 전통의류, 전통식품, 전통공예, 전통건축으로 구분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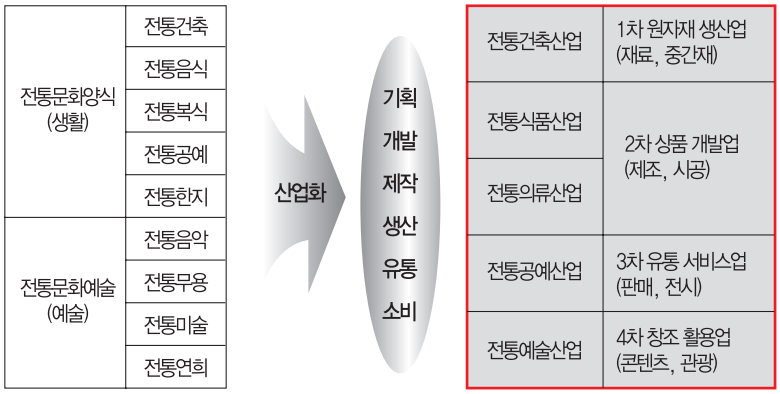

〈자료: 유동환(2011),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 방안" 참조〉

2) 전통문화산업진흥의 비전, 중점전략, 핵심사업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3대 비전 및 7대 중점전략

- 육성방안에서 제시하는 3대 비전은 첫째, 현대화로서 기반구축임. 문화가치와 디자인 융합화, 산업 생산단계의 집적화, 시장유통채널의 다변화 등을 포함. 둘째, 대중화로서 시장확대임. 전통문화상품의

생활화, 전통문화의례의 일상화, 전통문화교육의 대중화, 전통문화관광의 복합화를 담고 있음. 셋째, 세계화로서 체험소비임. 한류 동반 명품 상품화, 해외 라이선스 관리 강화, 전통산업 동반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3대 비전에 따른 7대 중점전략은 인력양성, 산업융합, 마케팅강화, 생활의례, 전통산업관광, 한류동반상품, 정책통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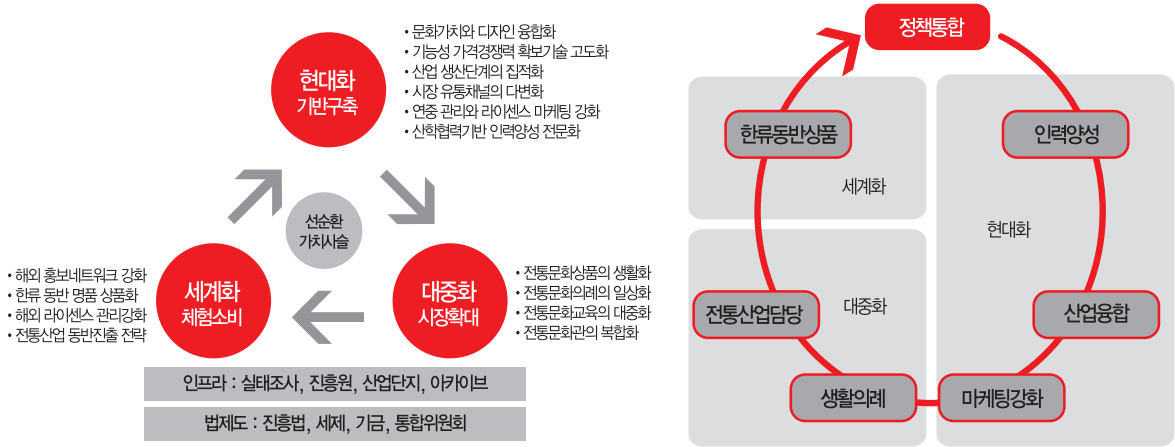

〈자료: 유동환(2011),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 방안" 참조〉

7대 중점전략별 육성 진흥 핵심사업

중점전략	핵심사업	사업내용
정책통합	전통산업진흥 정책기반 조성	• 산업분야의 독립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법' 제정, 세제기금 정비 • 범정부 전통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 범정부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 기본계획' 수립
인력양성	산업 가치사슬 인력양성 안정화	•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 기업의 전문교육자(기관) 지정 인증제도 • 산업현장과 전문교육기관 산학협력 마이스터 양성 교육제도 • 산업가치사슬 회복 비제조 분야 인력양성 및 전문가연계 지원
산업융합	전통산업 집적지원	• 전통문화산업 종사자와 자원기반 '전통문화촌' 지정 • 전통문화산업 가치사슬 회복 '전통문화산업단지' 진흥 • 실태통계 · 산업정보 · 문화자원 정보통합 '전통문화산업아카이브'
	자원활용 다각화 동반 발전	• 전통문화자원(소재 · 형태 · 문양 · 이미지 · 기법 등) 활용 상품화 지원 • 선도 전통문화산업 기반 동반 진출 및 토탈 스타일 공급 지원
마케팅 강화	상품 유통 브랜드마케팅 강화	• 전통문화산업 상품공동브랜드개발 및 운영, 관리사업 • 전통문화상품 전문 유통매장 다 채널화 및 운영사업 • 전통지식 · 전통문화 표현물 상품브랜드화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생활의례	산업관광	• 산업 체험관광 대중화 제고 • 전통산업 이벤트 관심 제고
한류동반상품	한류 글로벌화 국격 제고	• 신한류로 콘텐츠산업 수출증가 기반 동반상품 지원 • 콘텐츠 상품개발, 관광서비스 소비 통해 국가 품격 브랜드 제고 • 해외 한국문화원 한류콘텐츠 동반 전통문화상품 전시 홍보 강화

〈자료: 유동환(2011),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 방안" 참조〉

3)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내용 [3]

제1장 총칙

- 목적 :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중장기 기본계회의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 ·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제2장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제3장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 창업 및 경영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함(안 제10조)
-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 표준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전통문화촌의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 기술개발의 촉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의 조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안 제20조)

제4장 전통문화상품 등에 대한 인증

- 전통문화상품 인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전통문화상품 인증기관의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2011년 10월 21일,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참조했음

4.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 추진에 따른 전북의 대응방안

1) 한스타일 사업 포괄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정책으로 전환

◎ 한스타일 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한스타일 사업은 전북이 선점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전통문화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은 세계화 전략으로서 한스타일 사업을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전통문화의 산업화 전략임
- 따라서 전라북도가 한스타일 사업을 당장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집해서도 안 됨. 한스타일 사업은 정부지원이 무엇보다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임. 즉, 정부전략이 바뀐 상황에서 한스타일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스타일 사업을 승계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 체험 · 관광사업 중심에서 산업화 기반조성으로 전환

- 2011년의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한스타일 관련 사업을 보면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품개발 등이 없지는 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체험 · 관광에 치중돼 있는것이 사실임. 상품화 통한 세계화보다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전주시 한스타일 관련 사업현황 (2011년 사업을 중심으로)
전주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2011전주문화축제, 정읍고택 이축복원, 한옥마을 경기전길 문화경관 조성, 관광안내소 신축 및 이전, 비빔밥 산업 세계화 육성사업, 전주한식반찬 클러스터 사업, 전주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추진,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일반숙박시설 증저가 관광호텔 전환사업 등

-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구상. 전북에서도 전통식품, 전통의류, 전통건축, 전통공예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화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그런 점에서 전주한지 산업화 사례는 주목할 만함

◎ 전주한지의 산업화 사례를 다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수립

- 전주시의 한지 생산업체 및 장인이 전국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주는 우리나라 한지생산의 메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의 산업화는 요원한 일처럼 보였음. 다행스러운 것은 한스타일 사업에 힘입어 조금씩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는 것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지패션쇼〉

- 전통한지체험, 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한지제품 연구 및 디자인 개발, 천년한지 공동브랜드 개발, 한지문화축제, 전주 · 완주 · 임실의 지역연계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산 · 학 · 연 · 관 연계활동, 한지상품의 해외진출 등을 추진
- 이러한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구상하는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3대 비전(현대화, 대중화, 세계화) 및 7대 전략(정책통합, 인력양성, 산업융합, 마케팅강화, 생활의례, 전통산업관광, 한류동반상품)을 모두 실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전주한지의 산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산업진흥의 선두주자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전주한지의 산업화 사례를 지역의 다른 부문(전통식품, 전통공예, 전통의류, 전통건축)에 확대하는 실천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함

2) 사업추진에 난항 겪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에서 활로 모색

1단계 마무리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예산확보에 어려움 겪어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1단계 기반조성사업(2007~2011)이 마무리되고 있음. 전주한옥마을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될 정도로 1단계 기반조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둠
- 하지만 자립적 성장단계로 상정한 2단계(2012~2016)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핵심은 정부의 지원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임.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의 감소는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 활용,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계획 제안

- 여러 전문가들은 유교문화권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3대 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전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경상북도 사례를 참조할 것을 주문. 즉,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의 추진은 전주에서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음
- 특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 대부분이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활용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3)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미아신세가 될 위기에 처한 한스타일진흥원, 근본적 해결책 필요

- 전주시(2011)의 "한스타일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완공(2012년 6월)을 앞둔 한스타일진흥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운영주체 : 국가(문화부) vs 전주시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전국 대상 vs 전주 중심
  - 사업의 대상 : 한스타일 전 분야 vs 특정 분야로 선택과 집중
  - 사업의 기능적 범위 : R&D 및 산업화 vs 오락적 기능 포함
  - 중앙정부 연구기관과의 위상관계

- 핵심은 운영주체 및 운영예산과 관련돼 있음. 현재 예상되는 운영비는 연간 30억원으로, 현재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큼
  - 전주시 민간위탁 지원금이 연간 32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확보는 어려워 보임
-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함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 신규 설립시 막대한 예산 소요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발의와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 상세내역(김광림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보면,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새롭게 건립(2010년 발의된 법안에서는 신규 건립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진흥원 직원 수를 60명으로 가정할 때 필요한 사무공간은 2,280㎡(1인당 38㎡)이며, 사무공간을 서울시내에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사무공간 임차비용(서울시내의 사무 공간 임차 단가 평균액은 월 36,036원/㎡)은 연간 연 985,945천원(2,280㎡×36,036원×12월)이 예상됨. 이를 소비자 물가 전망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산이 필요함

〈전주시에 건립 중인 한스타일진흥원 전경〉

〈연도별 사무공간 임차료 소요액 :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임차료	1,059	1,092	1,124	1,159	1,194	5,628

- 만약 진흥원을 새로 건립할 경우에는 19,422백만원(토지 매입비 10,000백만원, 건축비 4,880백만원, 기본장비 구입비 3,842백만원, 조경비 700백만원)이 예상됨(2010년 황우여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비용추계 상세내역 참조)

한스타일진흥원의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 정부 · 전북의 윈-윈 전략

-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연간 수십 억원의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김광림의원 발의법안 기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스타일진흥원과의 업무중복을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이미 진흥원 완공이 눈 앞에 왔기 때문에 법 제정과 동시에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 운영이 가능함. 즉,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한스타일진흥원이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산업의 핵심거점이 됨을 의미. 특히 한스타일진흥원을 운영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될 경우 주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
- 결국 한스타일진흥원의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정부나 전라북도, 전주시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한편, 전라북도에 설치될 경우 접근성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올 수 있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와 근접거리인 전라북도에 설치하는 것도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4) 법안 핵심내용 대응 : 표준화, 인력양성, 전통문화촌 · 전통문화산업지구 조성 등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비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을 보면 표준화사업(제12조)과 전문인력 양성(제15조), 기술개발 촉진(제16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제18조)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을 전라북도 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위탁을 받거나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선정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전통문화의 기술(예를 들어, 한지 제작기법 등)이 표준화되거나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해야 함

전통문화촌 및 전통문화산업지구 조성 대비, 대상 후보지 파악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은 전통문화촌(제13조),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제19조) 조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절차나 지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하지만 전통문화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지역 특례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했으며,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정 · 개발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련 후보지를 파악한 뒤 법안 통과 이후에 진행될 전통문화촌 및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대상지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과 종합육성방안이 규정하는 문화산업 범위에 속하는 전통건축, 전통식품, 전통의류, 전통공예와 관련된 지역. 예를 들어, 전주한옥마을, 순창장류단지, 완주대승한지마을, 임실청웅한지마을 등의 지역을 꼽을 수 있음

5) 법 제정 위한 정치권의 노력 및 전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법안 발의자 대부분이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 정치권의 노력 절실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12인 중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은 10명. 그 중에서 경상북도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함. 경상북도가 3대문화권 조성 등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 발의자 : 윤영(한나라당, 거제시), 정해걸(한나라당,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군),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군), 유재중(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김세연(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성윤환(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김학용(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김성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강길부(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김광림(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권경석(한나라당, 경남 창원시), 이종구(한나라당, 서울 강남구)
- 전라북도 역시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됨.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 및 행정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발의된 법안의 부칙(제2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스타일진흥원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법 제정 이전부터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법 제정 이후의 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에 전라북도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조치가 요구됨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종합계획 필요

- 전라북도의 전통문화 산업화와 관련한 계획수립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2000), '전라북도 문화산업 육성방안'(2004) 등이 있지만, 시기가 많이 지났을 뿐 아니라 대개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음

-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한 것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임. 하지만 이 계획은 전주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결국 전라북도 전체의 전통문화 산업화 육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스타일 사업의 사실상 종결,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산업진흥 종합육성방안 수립 등을 계기로, 정부의 추진전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진희(2011), "현대한옥의 비전", 「한스타일 사업의 현황과 과제」(전북발전연구원 · 전북대한스타일연구센터 공동포럼).
-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韓)스타일(Han Style) 육성 종합계획"
- 유동환(2011), "전통문화산업 육성진흥 방안: 전통문화, 산업화의 날개를 달라", 「전통문화, 산업화의 길을 열다」(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의원김광림 공동주최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토론회)
- 전라북도(2000),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
- 전주시(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 전주시(2011), "한스타일진흥원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전북발전연구원(2004), "전라북도 문화산업 육성방안".
- 정광렬(2011), "한스타일 정책의 가치와 과제", 「한스타일 사업의 현황과 과제」(전북발전연구원 · 전북대한스타일연구센터 공동포럼).

Issue Briefing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